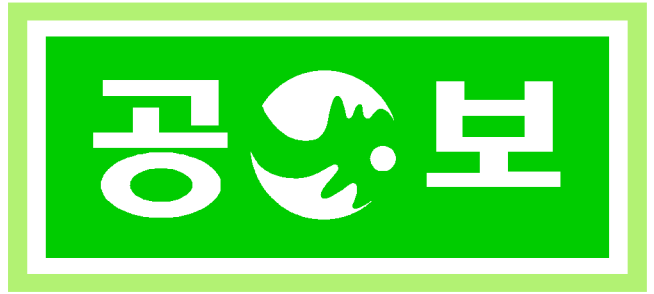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101 호 2018. 1. 10. (수)

공 고

○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48호[2018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] 2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 48호

2018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(단위 : 명)

총 인구수	19세 이상 인구수(A)	내국인	외국인	주민투표 청구주민수 (B=A/20)
200,718	155,305	155,066	239	7,766

※ 내 국 인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
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)

※ 외 국 인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

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

2018. 1. 10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 48호

2018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. 1. 10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
북 구	155,223	23,284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: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구	농소1동	27,181	1,553	
	농소2동	27,082	1,553	
	농소3동	30,229	1,553	
청	강동동	11,681	1,553	
	효문동	23,240	1,553	
장	송정동	16,396	1,553	
	양정동	9,782	1,468	
	염포동	9,632	1,445	

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	최소 서명인수	비 고
구 의 원	가선거구	55,258	11,052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	동별				
	농소1동	27,181		553	
	강동동	11,681		553	
	송정동	16,396		553	
	나선거구	57,311	11,463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	동별				
	농소2동	27,082		271	
	농소3동	30,229		303	
	다선거구	42,654	8,53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	동별				
	효문동	23,240		427	
양정동	9,782		427		
염포동	9,632		427		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 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

1. 구청장 :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
2. 구의원 :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- 48호

2018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(단위 : 명)

19세 이상 주민총수			연서주민수
계	내국인	외국인	
155,223	155,066	157	3,881

- ※ 내 국 인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
- ※ 외 국 인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연서주민수 :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40
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

2018. 1. 10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